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 국방기술품질원의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장기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의2 제2항·제3항)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의3 신설)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간주함(안 제60조제2항).

II. 검토의견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연계 개정 감안 필요(안 제32조제2항)

- 개정안 제32조제2항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장기사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¹⁾에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해당 별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는데, 현재 안 제32조제2항의 국유재산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39호)'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법률안이 연계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별도로 의결되는 경우 개정안 제32조제2항은 관련법 통과시까지 효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 적용시 공무원 간주 규정 삭제(안 제60조제2항)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 제60조제2항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²⁾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차. (생략)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해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6. 무기개발 실험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방위사업법」이 아닌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며, 국립묘지 안장에 있어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고 있는 예외적인 입법례³⁾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안 제60조제2항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함.

<안 제60조제2항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생략) ②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u>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u>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형법」이나----- -----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u>법률에 의한 벌칙을</u> <u>「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u> ----- ----- -----

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병 섭)